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81,621,484	20,448,645
일반회계	657,537,675	19,726,130
특별회계	24,083,809	722,514
기타특별회계	24,083,809	722,514
의료보호특별회계	2,650,147	79,504
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	884,284	26,529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16,923,720	507,712
주택사업특별회계	511,196	15,336
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	3,114,462	93,434

제 2 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 세입·세출예산 " 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" 9,676,092 " 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" 총액인건비 " 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